

국회에서 의결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19년 4월 23일

국 무 총 리 이 낙 언

국 무 위 원 박 상 기
법무부장관

● **법률 제16345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기본계획의 수립) ① 법무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본 방향
2. 인구·범죄의 증감 및 수사 또는 형 집행을 동향 등 교정시설의 수요 증감에 관한 사항
3. 교정시설의 수용 실태 및 적정한 규모의 교정시설 유지 방안
4. 수용자에 대한 처우 및 교정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적정한 교도관 인력 확충 방안
5. 교도작업과 직업훈련의 현황, 수형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작업설비 및 프로그램의 확충 방안
6. 수형자의 교육·교화 및 사회적응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추진방향
7. 수용자 인권보호 실태와 인권 증진 방안
8. 교정사고의 발생 유형 및 방지에 필요한 사항
9.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와 관련하여 관계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법무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때에는 법원, 검찰 및 경찰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실태조사와 수요예측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법무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5조의3(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 ① 법무부장관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법원, 검찰 및 경찰 등 관계 기관과 협의체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수용자에 대한 처우 및 교정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적정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수용자의 접견은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하게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접견하게 한다.

1. 미결수용자(형사사건으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는 수형자와 사형확정자를 포함한다)가 변호인과 접견하는 경우
2. 수용자가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와 접견하는 경우로서 교정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점견하게 할 수 있다.

1. 수용자가 미성년자인 자녀와 점견하는 경우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41조제5항(중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43조제7항 본문 중 “수용자에게”를 “그 구체적인 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해 관리하고, 수용자에게”로 한다.

제50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52조제1항 중 “유산”을 “유산·사산”으로 한다.

제5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조의2(수용자의 미성년 자녀 보호에 대한 지원) ① 소장은 신입자에게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를 의뢰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② 소장은 수용자가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를 의뢰하려는 경우 보호조치 의뢰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내 및 제2항에 따른 보호조치 의뢰 지원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제64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른 교화프로그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범죄원인별로 적절한 교화프로그램의 내용, 교육장소 및 전문인력의 확보 등 적합한 환경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4조제1항 본문 중 “제41조제2항”을 “제41조제4항”으로 한다.

제9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무인비행장치, 전자·통신기기, 그 밖에 도주나 다른 사람과의 연락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물품 제92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장이 수용자의 처우를 위하여 허가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물품을 소지할 수 있다.

제95조제2항 단서 중 “연장”을 “1회당 7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 단서에 따른 기간연장은 7일 이내로 하되,”를 “제2항에 따라 수용자를 보호실에 수용할 수 있는 기간은”으로 한다.

제96조제2항 단서 중 “연장”을 “1회당 12시간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 단서에 따른 기간연장은 12시간 이내로 하되,”를 “제2항에 따라 수용자를 진정실에 수용할 수 있는 기간은”으로 한다.

제103조제1항 중 “제133조”를 “제134조”로 한다.

제107조제3호 중 “작업·교육”을 “작업·교육·교화프로그램”으로 한다.

제108조제8호 중 “정지”를 “정지(신청에 따른 작업에 한정한다)”로 한다.

제129조제1항 중 “교정시설의 운영과 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소장”을 “수용자의 관리·교정교화 등 사무에 관한 지방교정청장”으로, “교정시설에”를 “지방교정청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를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로, “소장”을 “지방교정청장”으로 한다.

제1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2조(금지물품의 소지) ① 수용자가 제92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장의 허가 없이 무인비행장치, 전자·통신기기를 소지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수용자가 제92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주류·담배·화기·현금·수표를 소지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3조를 제134조로 하고, 제133조 및 제135조부터 제137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3조(금지물품의 반입) ① 소장의 허가 없이 무인비행장치, 전자·통신기기를 교정시설에 반입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주류·담배·화기·현금·수표·음란물·사행행위에 사용되는 물품을 수용자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교정시설에 반입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상습적으로 제2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5조(녹화 등의 금지) 소장의 허가 없이 교정시설 내부를 녹화·촬영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6조(미수범) 제133조 및 제135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37조(몰수) 제132조 및 제133조에 해당하는 금지물품은 몰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2조제1항, 제64조제2항 및 제3항, 제95조제2항 및 제3항, 제96조제2항 및 제3항, 제108조제8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법무부장관은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이유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라는 목적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수용자가 미성년인 자녀와 접견하는 경우 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접견할 수 있도록 하여 미성년 자녀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소지나 반입이 금지되는 물품에 무인비행장치, 전자·통신장비 등을 추가하고, 허가 없이 교정시설을 촬영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법무부장관은 5년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함(제5조의2 신설).
- 나. 수용자 접견은 원칙적으로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미결수용자가 변호인과 접견하거나 수용자가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와 접견하는 경우로서 교정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접촉차단 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접견 하도록 하되, 수용자가 미성년자인 자녀와 접견하는 등의 경우에는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접견할 수 있도록 함(제41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 다. 교정시설 내 소지와 반입이 금지되는 물품에 무인비행장치, 전자·통신기기, 그 밖에 도주나 다른 사람과의 연락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추가하되, 소장이 수용자의 처우를 위하여 허가하는 경우에는 소지할 수 있도록 함(제92조).
- 라. 종전에는 교정시설에 교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지방교정청에 설치하여 수용자 관리 및 교정교화 사무에 대한 지방교정청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함(제129조).
- 마. 소장의 허가 없이 무인비행장치, 전자·통신기기를 소지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소장의 허가 없이 무인비행장치, 전자·통신기기를 반입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132조제1항, 제133조제1항 신설).
- 바. 소장의 허가 없이 교정시설 내부를 녹화·촬영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제135조 신설).

<법제처 제공>